

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

제정 1986. 11. 10 조례 제 405호
개정 1997. 1. 15 조례 제 990호
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
2. 주민의 편의,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3.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4. 주민의 문화, 복지, 후생에 관한 사항
5.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
6. 기타 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각 계층간의 주민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, 계층별로 안배하여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. <개정 97. 1. 15>

제4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<개정 2018. 7. 31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회의의 개최) 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운영한다.

②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,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안건배부) 각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.

〈개정 97. 1. 15, 2018. 7. 31〉

제8조(회의록)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그 결과를 동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위원의 대우) ① 위원에게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7. 31〉

②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동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7. 31〉

1.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다른 동 관내로 이사한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, 장기 해외여행(6개월 이상)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11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〈1997. 1. 15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